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1590

제출일자: 2018. 9. 10.

제 출 자: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청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00년 달성 기념일이 2014년 3월 1일로 완료하게 되어, 그 목적을 다 하였으므로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2)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제1조,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8. 7.(화) ~ 2018. 8. 27.(월)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효와 전통의 고장인 달성군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달성군의 위상과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구심점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전환기를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일) 100년 달성 기념일은 2014년 3월 1일로 한다.

제3조(기념사업) 100년 달성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추진한다.

1. 기념행사
2. 학술 및 문화사업
3. 선양사업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0년 달성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달성군 소속 공무원 1명 및 달성군 의회에서 추천한 1명을 포함한 20인내로 구성하되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사업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회 권한) 위원회는 기념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의권 및 의결권이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기념사업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기념사업 선정 및 행사계획 수립 심의 확정
3. 각종 기념행사 주관
4. 기념사업으로 선정된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부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위원회는 기념사업 전체를 총괄한다.
5. 그 밖의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재원)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은 군예산과 그 밖의 사업수입 등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지급) ①달성군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들에 대하여는 달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촉된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운영 및 의결 정족수) ①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발의

로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기념사업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념사업 자원봉사단을 둘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군수는 기념사업 추진에 공로가 큰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의 종류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185호,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35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100년 달성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정책사업단장”을 “정책사업과장”으로 한다.

⑦~(29) 생략

부칙(조례 제2268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